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7. 8.(수) 10: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의결사항

#####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40-189~205)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를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4.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법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신고서 제출에 따랐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9년도 9월 16일부터 2000년 1월 15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6월 4일부터 18일까지 피심인의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19년 4월부터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시장 과열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그리고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피심인의 대상기간 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여명 중에서 5대 영업채널별, 지역별로 표본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2,07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18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민원제기된 7개 판매점도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심인①,②,③과 119개 유통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시 지원금 초과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개 유통점에서 108,547명(위반율 59.6%)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46,124원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차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119개 유통점 73,473건 전체 40.4%입니다. 신규 가입에 11~18만원, 번호이동에 28~43만원, 기기변경에 34~41만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91개 유통점에서 48,618건(전체 33.9%)에서 저가요금제에 5.2~10만원, 고가요금

제에 35~39만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여 차별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관련 내용입니다. 피심인①,②,③의 본사 및 지사에서 영업 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 요금제 추가 장려금 지급을 엄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과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피심인①,②,③의 지시·유도정책의 결과로 119개 유통점 64,540건(전체 35.4%)에서 가입유형별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차별적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0개 유통점 38,033건(전체 26.5%)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차별적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페이지 민원 제기된 판매점의 위반행위입니다. 6개 판매점에서 7,836건의 초과지원금 지급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 판매점에서 사전승낙서 미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위법성 판단입니다. 관련법 규정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119개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초과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9개 유통점이 유형과 요금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고 이어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부분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개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한 것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관련 사실확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이동통신 3사 의견청취**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가. 에스케이텔레콤(주)

###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에스케이텔레콤(주)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스케이텔레콤(주) 관계자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과 LGU+의 경쟁사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신고서 제출, 시장에서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사실 인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 까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6월 4일 귀사에 시정조치(안)를 통지하였고 귀사로부터 의견을 접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으로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이신 권영상님 나오셨습니까?

###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 ○ 한상혁 위원장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신 장준영 님 나오셨습니까?

### ○ 장준영 에스케이텔레콤(주)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 예.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은 모두 발언과 추가 보충 설명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영상 실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안녕하세요? 에스케이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권영상입니다. 저희가 의견서로 충분히 법률대리인의 의견은 제출드렸기 때문에 제 모두 발언으로 전체 발언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달성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및 5G 리더십에 오점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및 상임위원님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5G 상용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5G 가입자 확보와 시장 저변 확대를 통해 글로벌 ICT 경쟁력 확보 및 4차산업혁명 기반 마련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는 부디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사실조사 심결을 앞두고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반복되는 이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통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과열 문제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초래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주)은 이번 심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고 철저한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선방안들은 사업자 각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던 측면이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처와 KAIT, OPA 등등 제3의 기관 그리고 이통3사가 공통으로 이를 시스템화하고 DB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이통시장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결에 앞서 제출드린 재발방지 방안에 이러한 의지와 노력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통3사가 같이 성실히 관련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반기에 5,00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협력업체와 유통망, 그리고 초·중·고생 온라인 학습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곳이 확인될 경우에 좀 더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는 점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위반 행위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신규 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처분도 가능한 엄중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향후 재발방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과다 지원금 지급 행위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그리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나 유도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사무처를 충분히 조사를 통해 잘 정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자료제출 면에 있어서나 관련된 제출 아니면 현장방문 조사에서 가급적 모든 사안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조사협조를 너무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방해행위나 거부행위도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SKT가 보니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실행력을 담보하겠다, 이런 각오 내지 결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3년 동안 4차례나 유사 범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통3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거나 장려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거나 다양한 대책들을 저는 심도 있게 준비해서 내놓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되면 이런 실효성 높은 진정성 있는 대책들이 또 다시 무용지물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재작년 심결이나 작년 심결에서도 저희가 재발 방안을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위반행위 중심이 온라인 방문판매라든지 기업 사업 등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발표한 이행방안들은 사실은 또 새로운 위반사항들이 발생해서 또 법 위반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약속드린 방안들은 대부분 많이 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많이 문제가 되었던 방문판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인 저희 유통채널 외에 간접 망들에 대한 관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사안이 생기는 사안마다 대응하는 것보다는 DB화하고 시스템화 해서 공동으로 문제에 근본이 되는 사항을 빨리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다른 재발방지대책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DB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빠른 시기에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법 위반은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3사가 협력해서 하겠다, 이외에도 따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곳곳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SKT 측에서 중소기업업체 경영편드에 저리대출로 95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장비 조기 투자 및 중소 상생 플랫폼을 구축해서 3,300억원 장비투자비를 늘려서 100개사에 대해 하겠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동반성장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펀드는 당초 저희가 연초에 따로 책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월,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이 됨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이 저희 쪽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할 수 있게끔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500억원을 긴급히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업체 최대 30억원까지 나누어드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0억원 정도씩 대여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65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64개 업체 정도 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상반기에만 하도록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9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650억원 먼저 집행을 했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950억원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수혜를 입도록 이것을 해 드리면 좋은데 일단 10억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100여개 업체가 하반기 중 동반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장비는 장비공사가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장비를 포설하러 갔는데 건물주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급하게 저희가 선발주를 해서 장비들을 조기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했고, 이 금액들은 6월에 일부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런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같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함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성실히 이행하고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발굴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적인 측면으로 덮거나 이것을 무마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점들이 조금 정상 참작 요인으로 반영해 주시고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에스케이텔레콤(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 관계자 퇴장)**

**나. (주)케이티**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주)케이티 관계자가 입장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케이티 관계자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0년 6월 4일 귀사에 시정조치(안)를 통지하였고 귀사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 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이신 이영호 님 나오셨습니까?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주)케이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신 한승혁 님 나오셨습니까?

**○ 한승혁 (주)케이티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은 모두 발언과 추가 보충 설명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이영호 상무님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안녕하십니까? KT의 공정경쟁담당 이영호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KT는 귀 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과열로 위원님 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이번 시정 조치(안)에서 지적해 주신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에 준비한 재발방지대책은 저희 회사 단독이 아니라 이통3사가

합동으로 장려금 집행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비중이 높아지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자율정화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기존 대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근본적인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저희 이통사들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본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시어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건의 특수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건은 저희 회사를 비롯한 이통3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5G 단말기 전환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통3사가 번호이동에 과다하고 차별장려금을 집행하여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했던 과거 법 위반 사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 역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의 영세 중소 유통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이통사가 이들에 대한 지원과 5G 투자를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미 유통점을 비롯해 중소협력업체와 코로나 피해 이용자 등에 대해 올 상반기에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약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달성하여 5G 주도권을 선점한 것에서 나아가 세계 최고의 5G 선도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저희 이통3사가 통신 생태계에 대한 지원과 신규 투자를 보다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미 제출된 의견,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최종 의견과 관련해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재발방지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통신3사가 같이 재발방지 조치를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KT에서 전사 영업관리 구조별 별점제 운영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한 내용 같습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맞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사 영업관리 조직에 별점제를 운영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희 KT는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 이것이 외부 시장을 과열시키는, 촉발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립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모니터링 제도를 저희 사내에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11개 지역본부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간 별점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별점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본부에 대한 마케팅 예산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 경쟁으로 인한 시장과열 촉발요인이 지속한다면 영업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립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장모니터링 제도를 그대로 저희 사내에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KT는 두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맞습니까?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법 위반사항이 2건 더 발생했다고 했는데...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예를 들면 대상기간 이후 현장조사 기간에 저희가 시장 과열을 한 징후는 없다고 심사관이 시정조치(안)에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이후 저희가 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이라서...

○ **김창룡 상임위원**

- 나중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3사가 공동 또 KT 단독 이렇게 재발방지를 꼼꼼하게 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도 이전에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런 의지없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가동시키지 못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KT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일단 최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위반행위들이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부서와 유통망들에게 공정경쟁 카드뉴스라고 해서 단말기유통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라든지 공정거래법 관련되어 있는 법 위반사항들을 일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처리를 하는 등 일벌백계할 예정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작년 3월 15일 유통점 전체 상생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되었습니다. 이번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과거 법 위반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생각사업자 단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또 다른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심결을 앞두고 이통3사가 같이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통 3사가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은 시스템화하고 체계화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이통3사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 보자고 의지들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 낸 것들이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3사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시장 안정화, 시장 과열을 막아보자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재발방지대책과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와 조금 더 다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재발방지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기본적으로 3사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사가 공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을 낸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KT가 법을 위반한 건수 중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그리고 기기변경의 비중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한 가입자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에 신규가입자 중 67%가 기변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25% 정도가 MNP이고, 나머지 7%가 기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율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율이나 위반금액을 보면 MNP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신규, 기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조사를 받아봤더니 저희가 행위유형별 차별적 지급 중에서 60%가 넘는 것이 기변이었고, 그다음에 기변에 대한 초과지원금과 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건은 기변 위주의 5G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한승혁 (주)케이티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 위원님, 추가로 수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간 중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KT는 기기변경이 67.3% 정도 되고 번호이동이 25%, 신규가 7.3% 정도 수준입니다.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통신사의 하부 조직 또는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어려운 곳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대리점 지원 중 171억원 수수료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희가 하반기에 유통망들에 대해서 총 486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 300억원 정도는 중장기 운영자금 무이자 대여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171억원 정도 중 첫 번째는 여신이나 경영환경을 고려해서 대리점이 경영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최대 100개를 대리점으로 하고 대리점 당 최대 2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신상태가 안 좋거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대리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9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하나는 가입자 감소 대리점 중 자구노력이 높은 대리점들을 선정해서 관리수수료를 통상 저희가 60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점들에서는 관리수수료 지급기간을 24개월 연장해서 총 84개월 동안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81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1억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대리점은 직할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그것보다 더 어려운 판매점들, 직접 본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대리점과 연계관계를 통해서라도 그런 쪽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판매점들도 어렵다는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대리점들에 나가는 정책적 자금들이 판매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리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이 받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상반기에 이통3사가 카르텔의 상생협력사업으로 판매점들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는지 3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청취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주)케이티 공정경쟁담당(상무)

- 심결장에서 말씀드린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체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케이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케이티 관계자 퇴장)

**다. (주)엘지유플러스**

○ 한상혁 위원장

- (주)엘지유플러스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엘지유플러스 관계자 입장)

간단히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월 4일 귀사에 시정조치(안)를 통지하였고 귀사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인 김윤호 님 나오셨습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주)엘지유플러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신 박지연님 나오셨습니까?

○ 박지연 LG유플러스(주)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은 모두 발언과 추가 보충 설명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운호 상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안녕하십니까? LGU+ 공정경쟁담당 김운호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금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단통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사실조사에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즉시 사내와 모든 유통망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정 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심의·의결함에 있어 금번 사실조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5G망 구축과 서비스 조기 보급 등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5G 플러스 전략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이 합동하여 5G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스스로 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기에 시장을 안정화시켰고 과거에 비해 위반율도 낮았으며, 여러 번의 신규 단말 출시에도 소위 대란이 없었고 현재도 시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당사 스스로 하는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이통3사가 공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유통망과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은 유통채널을 구분·관리하고 온라인 전문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망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별점관리라든지 승낙철회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점 교육을 시행해서 유통점들이 법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3사 공동대책으로는 장려금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편법 온라인 자율정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위반 유통점 현장 점검과 고객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 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유통망 등에 상반기에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유통망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존자금 대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상담사들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도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 등과 같은 것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뉴딜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LGU+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여 활동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유통망 및 협력 체계 생존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 투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 고발이나 신규 모집 중지 조치는 취하지 않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보다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등 본원적 경쟁을 통해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 및 유통망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피심인측에서 제출하신 의견서와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발언해 주신 최종 의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내지는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번 조사는 LGU+ 쪽에서 방통위에 신고를 해 옴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 3사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공통으로 한 것도 있고, LGU+는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은 앞으로도 시장질서가 조금 문제가 된다면 LGU+가 또 신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희가 이번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은 5G 서비스가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원래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과열되어서 저희가 그런 자정기능을 스스로 잃었다, 그래서 원래 사람도 아프면 스스로 자가치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더 지속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하겠다, 하겠다면서 하지 않는데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끊어서 빨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진짜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또 중소기업도 이런 효과를 받아들이는데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서비스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5G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기지국 개발이나 중계기 개발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시장이 이상하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안정화시켜서 진짜 우리가 본원적인 5G 서비스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더 늦어지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과징금 수준이라든지, 잘못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진짜 저희가 5G를 잘해 놓고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 이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다른 회사도 말씀드렸다시피 3사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했다, 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다른 것과 다르냐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는 각자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한다고 해도 서명을 3사가 협약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아니면 전산적으로 장려금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를 관리하고 또는 관련 협회 등 그 업무의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같으면 KOSA라는 협회,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슈 같으면 OPA라는 협회를 아예 끌어 들여서 아예 같이 하자고 한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가 경쟁을 하는 기본구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 위반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U+가 특히 재발방지 조치라고 특별히 내놓은 것이 영업채널 간 월경이나 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를 운영하겠다는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리점에 주는 것이 장려금을 주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대리점이고 그 하부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위반행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빨리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을 도매, 소매 이런 조직들을 온라인을 아예 구분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되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전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온라인 때문에 처벌을 받은 때도 있었는데 온라인들이 아닌 곳에서 더하면 시장질서라든지 아니면 위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리점을 전문화해서 다른 대리점에서는 그런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금방 할 수 있고, 금방 치유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타사와 다른 점이고, 저희가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저희가 두 달 전에 리스크 관리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슷한 맥락인데 LGU+가 이번 시정조치 이 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은 언론사의 지적 그다음에 LGU+의 사실조사 신고서 제출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LGU+ 측에서는 법 위반 부분에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이라는 것이 3사가 같이 하는 것이고, 사업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대리점, 자기 매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 데 100%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범위를, 우리 스스로 통제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잘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났고 그다음에 3사가 자정해 보자고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대리점에서 이슈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빨리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신고한 것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3사 공통의 대책, 그다음에 LGU+ 단독의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일로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3사가 마련한 또 LGU+가 마련한

대책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발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제가 오지 않으면 답변을 “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LGU+ 측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술선수범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디테일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U+는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세 차례나 지정된 사실이 있는데 혹시 확인했습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집중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사 자율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튀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리고 서면 경고도 두 차례 이 기간에 받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LGU+는 신고정신도 투철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조사기간에 타사들은 받지 않은 서면경고를 받을 정도로 타사와 차별이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모니터링 사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약간의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튀어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해서 특별한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약간 저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모니터링 접수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발방지조치를 자세히 봤는데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3사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KAIT나 OPA까지 끌어 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체 단속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도 확신도 못 하지 않습니까?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떤 의지가 강해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재발방지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김윤호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아시지만 경제가 어렵고 또 과거와 달리 가입자도 포화되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보조금 경쟁을 과연 계속 해야 하는냐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콘텐츠 개발이나 투자, 품질 서비스를 강화해서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희 회사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VR·AR 1,200만 달러 정도 수출한 실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하자고 해서 저는 확신하고 우리 회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지연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잠깐만 첨언해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는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3사 공통으로 말씀드린 각 유통망에 내려지는 정책 출처 확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LGU+는 특별히 본사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일원화된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은 정책이 실행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구축사항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집행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김 상무님이 보시기에 이 3사의 공통 재발방지조치, 아니면 단독의 재발방지 대책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김윤호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3사가 하는 것 중 장려금 이력 시스템 관리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슈화된 것 온라인 자율 정화 관리 시스템인데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이쪽에 수시로 올라오는 것들을 URL을 찾아내서 경고를 줘서 하는 2가지 시스템이 가장 강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부분들도 각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하고 또 제3기관들까지 포함되어서 가면 훨씬 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체크가 유의미해지고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예, 그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청취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호 LG유플러스(주) CRO 공정경쟁담당(상무)

-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전국 조기 구축과 콘텐츠 개발,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저희가 전사 역량을 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통망과 협력사 상생도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워진 경제회복도 기여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 시정조치(안)를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당사의 의지와 노력을 감안해 주셔서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엘지유플러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엘지유플러스 관계자 퇴장)

이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치와 관련한 사무처를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치와 관련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안건 11페이지 4번 시정조치(안)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심인①,②,③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서 첫째,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둘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셋째 재발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 넷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모집금지와 관련해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4일째 반복 되었으므로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중대한 위반행위이거나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른 경우에 피심인①,②,③의 위반행위는 3가지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심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관련입니다.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들어서 관련매출액을 근거로 기준금액을 작성하고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피심인의 매출액으로 산출하여 각각 피심인①의 경우에 1조 5,385억원, 피심인②는 1조 1,726억원, 피심인③은 9,33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액을 구하기 위해 피심인①,②,③의 경쟁위반행위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와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성 판단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피심인①과 피심인③에게는 2.2%, 피심인②에게는 2.0%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①,②,③의 기준금액은 각각 338.5억원, 234.5억원, 205.4억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필수적 가중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가 4회 반복 되었으므로 각각 20%씩 필수적으로 가중하였습니다. 다음 추가적 가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적 감경과 관련하여 3가지 사유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첫째, 관련 유통점의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둘째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셋째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①,②,③의 조사대상 기간 중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한 실적이 인정되므로 각각 10%씩 감경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①,②,③의 본부·지점 등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였고,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 감경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①,②,③이 제출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등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각각 <제1안>의 경우 10% 또는 <제2안>의 경우 20%씩을 감경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최종 과징금에 대해서는 <제1안>, <제2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제1안>은 추가적 감경을 총 30%를 적용하는 안이고, <제2안>은 추가적 감경을 40%를 적용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형사고발 관련 사항입니다. 피심인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1안>으로는 유사 사례에 대한 대부분 무죄판결 취지를 고려하고 법률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고, 또한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

므로 형사고발하지 않는 안으로 작성하였고, <제2안>은 제9조제3항 위반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전체 영업채널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고발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를 명령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존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례에 따라 위반건수나 위반금액을 고려하여 각각 30% 또는 50% 가중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30% 감경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 총 과태료 부과액 2억 7,14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당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119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초과지원금 지급 행위'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차별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부과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전승낙제 위반과 관련해서 1개 유통점에 대해서 100만원을 부과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번 피심인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 2>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의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구태여 시정조치(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건은 이동통신 3사와 125개 관련 유통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사 지원금 초과지급과 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작년 4월부터 5개월간 영업채널별·지역별 유통점을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해서 119개 유통점 18만여 건과 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모두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처 보고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과징금 부문과 관련해서 지금 사무처에서 아주 신중하게 <제1안>과 <제2안>을 올리셨는데 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가 감경 40%냐, 30%냐 이 부분에서 저는 수정안으로 45%로 올려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5G 최초 상용국가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그리고 통신 3사가 이에 발맞추어 적극 협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업계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가입자 뺏기식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닌 기기변경, 보조금 지급 등에 이 불법행위가 집중된 점 등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대리점과 또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EBS 온라인 교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은 사무처 보고처럼 <제1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신규모집도 제외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시정조치(안)은 사무처 보고한 그대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최근 3년간 각각 4차례나 유사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자유

로운 거래질서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규제를 자초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업계에 엄중히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요약하자면 나머지는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견이시고, 형사고발 <제1안>, <제2안> 중 <제1안> 고발하지 않는 안에 동의해 주셨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1안>, <제2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추가적 감경 30%, 40% 외에 <제3안>으로 추가적 감경 45% 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런데 45%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감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처 어떻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보시면 재발방지대책이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1안>, <제2안>을 10%, 20% 잡았습니다. 그래서 45%로 하려면 거기 부분에서 5%를 올리는 것이 적정한 안으로 보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45% 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으로 하고, 형사고발하지 않는 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사실조사에 애써 온 사무처 직원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통사들이 5G를 도입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이나 고가의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들 불만이 줄지 않고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조치 안건을 검토하면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추진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5G 투자의 필요성, 또 코로나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 위반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 내용 중 먼저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규 모집 금지 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모집 부과를 할 경우에 지금 코바로에 어려운 중소유통점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처 원안대로 신규모집 금지 부과는 제외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형사고발도 과거 유사 사례 대법원에서 무죄 판례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김창룡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5G 보급을 위한 그러한 정책도 맞물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율규제를 10% 감경이 가능한데 그것은 10% 다 감경하는 것으로 했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리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과거에는 본사단에서 적극적인 조사협력 부분이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속 대리점이 조사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전속 대리점이 본사 쪽에서 조사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큼니다. 그러나 차원에서 대리점단의 조사가 협조를 받아서 순조롭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협력한 경우에 최대 20%이지만 10% 정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조사 협력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현재 10%인데 이것을 15%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발방지조치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가운데 20%를 감경한다면 45% 될 것 같습니다. 저 퍼센티지에서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과 같이 감경 퍼센티지 45%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룡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45%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사항인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사 간 과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통사들은 법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보조금 경쟁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또 이용자들의 불만도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협의회에서 정말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5기 위원회에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정말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통사 그리고 유통점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경쟁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구체적인 감경요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김창룡 위원님이 현장 발의해 주신 <제3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모집 금지 부과를 제외한 사무처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결론적으로 45%로 감경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반건수에 보면 3사 평균 60% 정도가 기기 변경입니다. 5G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건 측면이 있고, 통신3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위반건수와 그 위반건수 내용의 비중이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신3사가 급하니까 자사 가입자들로 하여금 기기변경을 우선적으로 독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곳곳이 어려운데 특히 통신3사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 지원이나 그다음에 대리점 지원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45% 감경하는데 동의를 하고 따로 시정조치(안)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피심인들 모두 법 위반행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본 안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에 있어서 중대성의 판단 지표로 과다 지원금 위반율과 차별 지원금 위반율, 그리고 차별 유도 위반율을 합산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를 80% 비율로 하고, 경쟁질서 위반 행위로 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변동가입자 참여율 20%를 적용하여 도출한 것은 합당한 산정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심인들은 최근 3년간 3차례의 단통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3월 온라인 영업점들의 단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때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식 체결을 강조하면서 향후 단통법과 상생협약을 잘 지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자 3사 모두 법 위반을 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공개적인 약속 천명조차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피심인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조기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는 단통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에 5G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명분으로 한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애플의 아이폰12 등 신규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시장 과열과 법 위반 행위가 재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심인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코로나 19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은 물론 경제와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역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법 위반행위가 번호이동을

통한 타사 가입자 뺏기보다는 자사 가입자의 5G 전환을 위한 기기변경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심인들이 관련 유통점의 법 자율 준수 제도를 운영한 점, 또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추가 감경사유의 근거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동안 공짜폰 출현의 근거가 되어 왔던 장려금에 대해서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을 3사 공통으로 구축키로 한 것과 KAIT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3사 공동의 온라인 자율 정화 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매집 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을 제3의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키로 한 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은 피심인들이 재발방지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EBS 이용 데이터 요금을 감경해 온 것이나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수십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도 감경사유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SKT, KT, LGU+에 대해 시정명령은 원안대로, 신규모집 금지 조치는 최근 3년간 4회째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과징금 부과는 중대 위반율을 적용한 기준금액의 필수적 가중액의 추가 감경 40%를 적용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5%의 추가 감경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에서 그 명분으로 이러한 이유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사고발은 역시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하고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룡 위원님이 수정 제안해 주신 45% 감경하는 안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계십니다. 원안에서 그 부분, 안건 내용 중 과징금 부분을 45% 감경으로 수정한 부분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만 원안과 변경이 된 대로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문구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문구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위임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예,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 5%를 추가로 감경할 경우 세부 감경 항목 중에서 조사협력한 경우로 할 것인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지...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도 두 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 허 옥 상임위원

-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저는 종전의 사례로 보면 재발방지 대책이 3사 공통으로

준비되어서 마련된 것인데다가 추가적인 안들이 있고 기타라는 것을 이번에 달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들이 사실상 하반기에 재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의 노력도 저는 어느 한 부분 고려된다고 봐서 재방 방지 및 유통점 고려 차원에서 그 부분을 5% 늘리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안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도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3사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3사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그 부분에서 5% 추가 감경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45%라는 숫자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방금 허 욱 위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조사 협조를 했다는 부분에서 10%를 감경했었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아닙니다. 조사협조에 대해 이통사에게 감경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5% 감경을 플러스하자고 했었는데, 일단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 5% 감경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더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라는 그런 다짐에 또 우리가 그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 감경을 재발 방지 조치 이 부분에 감경하는 것으로 제 주장을 바꾸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조사 과정과 심문 과정, 그리고 오늘 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종합하다 보면 이것이 어찌됐거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인정되긴 하지만 조사결과 초과지원금 지급 문제, 그리고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행위 문제 모든 것들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기여한 것과 별도로 평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마땅히 우리들이 논의한 시정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징금의 제재 수위, 과징금의 수위는 조사 이후에 이통3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사무처의 고민들이 합쳐져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소모적이고 과열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한

요금경쟁 그리고 품질경쟁, 콘텐츠경쟁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서 제재할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는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추진 경과입니다. '20년도 1월 '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2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에 6월 23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3> 평가 개요입니다. 목적은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평가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PP가 운영하는 채널 중 2019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려운 채널과 공공채널, 공적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 종교 및 성인채널 등 평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채널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상 부분은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채널을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구분한 후에 각 그룹 내에서 공급분야 특성에 따라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승인·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채널입니다. 공급분야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특성 및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평가결과는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각각 공급분야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우우수, 우수 등으로 산출합니다. 평가결과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공급분야별 상위 2개 그룹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을 공개하고,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하며,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를 활용합니다. <4> '19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자원 경쟁력 부분의 제작비 항목 평가 지표 중 '제작비 증가분'을 '제작비 증가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매출규모가 큰 PP의 제작비 증가액이 큰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작비 규모와 관계

없이 PP의 지속적인 제작비 투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5>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12월에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 한류 확산 등 최근 방송콘텐츠 생태계에서 PP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PP들은 방송평가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는데 저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평가방식을 바꾸더라도 방송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아홉 번째로 맞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가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자극제가 되고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우수사업자에게는 2021년도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여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도 결과가 반영되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 과정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등록대상 P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염두하신 사항은 공공·공익채널의 포함 여부를...

○ **김창룡 상임위원**

- 공공채널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을 이야기했습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그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과 같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하고 있고, 단지 다른 것은 아까 사무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작비 증가분을 증가율로 바꾼 것, 왜냐하면 증가분으로만 따진다면 큰 PP가 역시 증가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증가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평가항목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봐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실무자, 특히 이것을 연구해 왔던 분이 뜯으려면 다 한꺼번에 고쳐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쳐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대상에 점수를 준다, 지금 현재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저희 평가에 따라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앞으로 차기에는 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안형환 위원님을 비롯해 사무처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안)을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평가 체제를 바꾸어서 평가대상을 규모에 따라 가·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장르별로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특히 방송콘텐츠의 제작역량 평가 틀을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 이렇게 3개 요소로 구분하고 14개 항목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평가에 참여한 제작사들 가운데 평가 등급이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가' 그룹이나 '나' 그룹을 비교한 결과 들이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16년도 대비 '18년도에 20개 정도 사업자가 평가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저는 그런 내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전의 경우에 보면 가·나 그룹이나 장르별로 매우 우수나 우수 제작사가 어느 곳이나 하는 일종의 순위 발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년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규모별·장르별로 14개 항목 가운데 신규 콘텐츠 제작이 늘고 있는지, 혹은 해외시장의 유통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시계열로 나누어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이 뛰어난 미국이나 터키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평가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제작역량 수준을 일정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그 사이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 자체도 이미 개선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광고협찬의 축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평가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계속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든 제도가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PP들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되어야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의례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면 저는 의미가 반감이 아니라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평가를 받는 PP들이 '그냥 평가받았다' 하고 넘어가는 정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PP들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도 뭔가 협력방안들을 마련해서 그쪽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위원장님,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이 평가는 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자기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스스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제작 창작물의 제작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평가는 시작했는데 그 결과들이 제작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들을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PP들에 대해서 플러스 메리트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점수 공개하는 것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사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든지, 또는 제작지원 사업의 이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키우는 것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조치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2019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인 127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별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 있습

니다. 필수지정사업자인 지상파, 보도·종편PP는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의무사업자의 경우에는 SO와 일반PP에게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의무비율을 높여 가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 127개사 중 108개사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사업자는 지역MBC 7개사, EBS1, G1, MBN, CJ헬로 계열 4개 SO, (주)씨엠비 계열 2개 SO, 터너코리아, (주)현대미디어, (주)엣지티비 등 총 19개사입니다. 달성률을 보시면 지역MBC 등 필수지정사업자와 CJ헬로 계열 SO들은 자막에 대해 99.9% 이상의 달성률로 100%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주)씨엠비 계열 SO들은 자막 92.7%, 터너코리아는 화면해설 69%, (주)현대미디어는 자막 79% 및 화면해설 88%, (주)엣지티비는 자막 97%, 화면해설 99.5% 등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주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역MBC 등 필수지정사업자와 SO들의 경우에 담당자 실수, 자막송출 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 등이 주된 사유였으며, PP들의 경우에는 편성비율 목표치에 대한 착오 등의 사유로 달성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미달성 사업자 모두 단순과실이 원인이 되어 달성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소명 내용이 불가항력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 일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방안입니다. 2019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게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개선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여 관계자들의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일부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방송사들에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겠으며, 위에서 보고드린 조치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붙임>의 2019년도 세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 127개사 중에서 평가결과 108개 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일부 위반한 19개 사업자들도 폐쇄자막비율이 1% 미만의 위반율 등 대부분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또 장애인의 시청권 확대인 만큼 2020년도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실수로라도 위반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행정지도와 또 제작지원금 패널티 등 지금처럼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그다음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대

부분 목표 달성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목표 달성 못한 업체들의 경우 부주의, 오류, 착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부족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또는 함께 보는 방송을 위해서 방송사들의 더욱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지난해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평가를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PP를 비롯해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대상 127개 사업자 가운데 미달성사가 19개로 15% 수준입니다. 미달성률이 높아 보이지만 미달성된 사업자들 가운데 필수지정사업자 10개사와 고시의무사업자 4개사 등 14곳의 자막방송 의무 미달성률이 평균 0.045%입니다. 다시 말하면 99.955%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정도 수준이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는 전반적으로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가 여겨 집니다. 목표 미달성 원인이 송출업체나 아니면 편성담당자 부주의, 프로그램 오류로 나타나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여겨 집니다. 따라서 편성의무 이행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올해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금 지원비율에 패널티를 적용하려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안건과 조금 다른 사안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현재 5%인 수어방송 의무 편성비율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청각 및 시각장애인단체에서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아직 인권위 권고 이후에는 회의를 연 적이 없어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다음번에 그 회의를 열 때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로 보면 한국이 장애인방송에 관련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이 방송사로 보면 편성자율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비장애인, 즉 일반인들로 보면 또 시청권 보장의 제한이 있다는 의견 등 이해관계자마다 충돌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장애인 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6분 폐회 】